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사업 등록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 근거 마련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26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관광사업 등록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소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8. 29.

다. 회 부 일: 2025.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북촌한옥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관광사업 등록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신설, 제48조의3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① ~ ③ (생략)	제4조(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 ⑤ (생략) 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 ⑩ (생략)	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관광 객 통행 제한, 관광사업 등록 제 한-----. ⑦ ~ ⑩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¹⁾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과 시설, 설비 등을 갖

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이나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생략)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준비·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 7. (생략)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 ⑩ (생략)

○ 이와 관련하여,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몰리는 일부 지역은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에서도 관광사업 등록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조례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임한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최근 관광객의 과도한 유입으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관광사업을 등록한 업체들보다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나 문화유산, 경관, 식음료 업장 등에 대한 관심에 따른 유입이 더 많을 것으로 보는 측면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사업 업종 세부 분류]

구분	세부 분류
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그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거나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

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제한 등 관광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관광사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광객의 많은 유입은 유명 관광지와 관광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선호 등에 따른 것으로 관광사업체의 수 증가 등이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

(2025. 11월 기준)

구역명	지정 지역(소재지)	지정일	지정주체	조치 내용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 일대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등)	2024.7.1.	종로구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오후 5시~익일 오전 10시) - 전세버스 통행 제한
한탄강 관광지 특별관리지역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일대 (전곡읍 전곡리 692-2번 지 일원)	2024.11.15.	연천군	- 일반기간·중점관리기간 별로 방문시간 및 야영가능요일 지정